

2022년 제2회 경상남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2022년 제2회 경상남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년 7월 12일

경상남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임용예정부서	임용분야	임용등급	선발예정 인원	비 고 (근무지)
경상남도 의회사무처	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1명	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

2. 응시 자격 요건

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 - ※ 연령 · 성별 제한 없음,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 - ※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나. 자격요건 : 임용예정분야별 다음의 자격기준 요건을 갖춘 자

임용예정부서	임용분야	임용등급	자격기준(면접시행(예정)일 기준)
			*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,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경상남도 의회사무처 (입법담당관)	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<p>(경력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(우대요건) 농업, 환경, 교통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

※ 관련분야 실무경력

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연구소(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포함)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지방자치, 지방행정, 법제, 법률해석, 법·제도 연구 및 조사·분석·강의 근무경력(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야함)
- (우대요건) 농업, 환경, 교통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- 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하고,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. 다만,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함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

다. 직무내용

임용분야	임용등급	주요업무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책 발굴 및 분석 등 정책 활동 지원 - 상임위원회 소관별 입법 및 정책안 발굴 - 도의원 정책발굴 관련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 등 <p>※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사항</p>

3. 근거 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(신규임용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205호, 2022.4.27.)
- 「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(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)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(신규임용시 연봉책정)

4. 보수 수준

- 근 거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에 따름
(단위 : 천원)

구 분	등 급	상한액	하한액	비 고
지방행정주사(일반임기제)	6급(상당)	77,932	51,928	

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최초 임용시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, 자격,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

- ※ 연봉 외 급여(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, 시간외 근무수당 등)는 「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(임기제공무원)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임용 기간

- 정책지원관 분야 : 2년(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)

6. 시험 방법

-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(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)
- 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실시)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 -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 -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 -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
 - 창의력 ·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

7. 시험 일정

공 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 일자(예정)	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
'22. 7. 12.(화) (10일 이상)	'22. 7. 25.(월)~27.(수) ※기간 중 업무시간 내 (09:00~18:00)	'22. 8. 18.(목)	'22. 8. 26.(금)	'22. 9. 2.(금)

*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각 분야별 세부일정 확정 공고
 ⇒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(<https://council.gyeongnam.go.kr>) 에 게시

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가. 원서교부 :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(<https://council.gyeongnam.go.kr>) 다운로드
- 나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- ※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 대신 등기우편 접수 권고

다. 접수장소 : 경상남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교육담당(1층)

<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>

- 주 소 : ⑨ 511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(사림동) 경상남도의회 총무담당관
인사교육담당
- 유 효 일 :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(택배,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)
***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**
- 추가서류 : 우체국의 통상환증서(해당 금액상당) →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후 납부
반신용 소봉투(응시표 수령용) → 등기용 우표 부착, 수신인 성명·주소 기재

9. 재공고
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
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실시
-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
제출할 필요 없음

10. 제출 서류

① 응시원서(붙임 양식) 1부

- 응시수수료 : 세외수입고지서 납부*(우편접수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 대체)
*** 종이 수입증지 발행 종료(22.7.1.)로 방문접수 시 수령한 세외수입고지서를 금융기관에
납부(당일 납부)**
 - 금 액 : 6·7급(상당) 7,000원
 - 납부방법 : 원서접수 시 발급한 세외수입고지서 금융기관 납부(당일)
 - 유의사항 :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

② 이력서(붙임 양식) 1부

- 학력, 자격, 상훈, 경력, 저술,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
※ 단,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불가)

③ 자기소개서(A4 2매 이내, 붙임 양식) 1부

④ **직무수행계획서(A4 3매 이내, 복임 양식) 1부**

⑤ **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이력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**

- 복임 「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」 제출 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

⑥ **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(원본)**

- 박사 학위는 석·학사 학위,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

⑦ **경력증명서 1부(원본)**

- 경력 인정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(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)
- 발행기관(기업체)의 직인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연락처 기재
-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(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증명서류, 기타 등록증·허가증 등) 첨부

※ 비정규직(비상근)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(미제출시 불인정)

⑧ **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(원본)**

- 발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
- 발급요령 :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를 위해 가입기간을 “전체기간” 선택
- 유의사항 :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

⑨ **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(복임 양식) 1부**
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
-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
-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·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
(예시 :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, 자격증명서 등)
-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,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
-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11.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

-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(상·중·하의 평정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, 단 동률이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)를 합격자로 결정

평정 요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•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•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----------	---	--

- 불합격 처리기준

-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“하(미흡)”로 평정
-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(미흡)”로 평정

- 최종합격자 발표 :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(<https://council.gyeongnam.go.kr>)에 게시

12.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랍니다.
- 나.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: 졸업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- 다.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라. 2차시험(면접시험)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마.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바. 특히,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원칙(자격·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가능)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만 인정되며,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

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사.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아.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- 자.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.
- 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총무담당관(인사교육담당 ☎ 055-211-70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3.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단계별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.
- 나. 단계별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하며,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다. 응시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라.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응시생 중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 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일까지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발열체크 등을 통해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.